

인천지방법원 2021. 1. 19 선고 2020가단21377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중소기업진흥공단

피 고 A

변론 종결 2020. 12. 22

판결 선고 2021. 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9. 3. 5. 체결한 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9. 3. 5. 접수 제77528호로마친 소유권이 전등기 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 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1)는 2017. 9. 5. B와 사이에 대출금액 100,000,000원,대출과목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기간 2022. 9. 6.까지,이자율 연 2.64%, 지연배상금율 연 12%로 정하여, 원금 상환은 원리금상환기일표에 따라 상환기일에 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하고, 이자는원리금상환기일표에 따라 매월 상환기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 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2020. 3. 1.을 기준으로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잔액은 104,456,067원이다.

다. 묘은 2019. 3. 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 라 한다)을 피고에게 분할하는 내용의 재산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은 과도한 재산분할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 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 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이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 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제2항의 규정 취지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 으면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 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판결, 대법원 2000 . 9. 29.
선고 2000다25569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판결 등 참조).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2.29. 선고 2016다249816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1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즉 ① 피 고와 B은 2009. 5. 22.
혼인하였고,2019. 1. 28. 협의이혼한 점,② 이 사건 부동산은 2010. 4. 20. 피고와 B이 매매대금
182,500,000원에 공동으로 매수하여 각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인데,매수
당시 피고는 B과 혼인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이를 B 또는 매도인 계좌에
송금하는 등으로 적어도 58,500,000원을 부담하였고, 주식회사 C으로부터 100,000,000원을 피고
명의로 대출받 았는바,피고가 매매대금 182,500,000원 중 적어도 158,500,000원을 부담한 점,③
위 C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피고가 납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④ 피고는 2009. 3. 2.부터 2010 . 6.
14.까지 B에게 합계 66, 268, 000원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준 점, ⑤ 피고는 B 명의로 된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기로 하되, 35,000,000원을 B에게 지급하 기로 하는 내용의 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9. 5. 24. B에게 35,000,000원 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의 대부분은 피고가 부담하 였고,피고가 달리 B과의 혼인 생활 중에 새롭게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자료도 제출된 바 없는 이 사건에서2)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재산 분할로 이전받은 것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 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남해인

별지

1) 중소기업진흥 공단에서 2019. 3. 19. 중소벤처기업 진흥 공단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2) 다만 관련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18977 사건 판결문(을 제16호증)에 의하면, 끼 사건 부동산 이외에 피고가 B 과의 혼인 이후 취득한 부동산은 강원 평창군 D 토지 중 일부 지분(거래가액 4,263,000원), E 중 일부 지분(거래가액 377,000원)으로 가액의 합계는 4,640,000원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